

명예훼손 사례

■ 유명화가 작품을 다른 화가 작품으로 잘못 보도한데 대해 유명화가 작품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조정합의

A종합편성채널은 패널들이 대담하는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에서 B동양화가를 비방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같은 동양화가인 신청인의 작품을 B화가의 작품으로 잘못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B화가의 작품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A채널이 무단으로 신청인 작품 이미지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A채널은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신청인 작품이 잘못 사용됐음을 알리는 사과문과 함께 신청인 작품 4점의 이미지를 A채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4일간 노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동일 내용을 1주일간 게재하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1개월 간 게재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소송 중인 사안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건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결정

C방송사는 서울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권 관련 소송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신청인이 이웃 주민의 통행을 금지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신

청인의 행위는 형사상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토지는 수십 년간 외부 통행로로 이용된 토지가 아니었고,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종국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상대 당사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소송 중인 사안을 다루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었고,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소송 사건 양 당사자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 정정 및 반론보도를 보도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시청자가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

D방송사는 '비행기 회항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신청인이 해당 항공사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공사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신청인이 회사의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상권침해 사례

무관한 기사에 DB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초상권 침해한 사례, 150만원 지급 결정

E인터넷신문사는 언론사 DB에 저장되어 있던 신청인의 사진을 재활용하여 해당 사진과 전혀 무관한 기사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년 전 박람회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보도된 바 있고, 전혀 무관한 내용의 조정대상기사에서 해당 사진이 재활용되었으며 해당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재되어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게재된 점과 해당 사진이 모자이크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150만원 지급 및 조정대상 기사(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포함) 하단의 댓글을 차단(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